

1. 개 요

: 외국회사 등기와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

2. 신구조문비교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14조(代表者, 營業所의 設定과 登記) ① (생 략)</p> <p>②前項의 境遇에는 外國會社는 그 營業所의 設置에 關하여 大韓民國에서 設立되는 同種의 會社 또는 가장 類似的한 會社의 支店과 同一한 登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③前項의 登記에서는 會社設立의 準據法과 大韓民國에서 代表者의 姓名과 그 住所를 登記하여야 한다.</p> <p>④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〈신 설〉</p> <p>제615조(登記期間의 起算點) 前조제2項과 제3項의 規定에 依한 登記事項이 外國에서 生긴 때에는 登記期間은 그 通知가 到達한 날로부터 起算한다.</p>	<p>제614조(대표자,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외국회사가 제1항의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일부터 3주일 내에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목적 2. 상호 3. 회사를 대표할 자의 성명·주소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,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) 4.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5. 본점의 소재지 6. 영업소의 소재지(다른 영업소의 소재지는 제외한다) 7. 회사의 존립기간 내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8. 대한민국에서의 같은 종류의 회사 또는 가장 비슷한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본국에서의 공고방법 및 제616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에서의 공고방법 <p>③ 제2항의 등기에는 회사설립의 준거법과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·주소 및 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로 하되,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)가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14조의2(영업소의 이전·변경등기) ① 외국회사가 영업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3주일 내에 종전 소재지에서는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, 새 소재지에서는 제614조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6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영업소의 소재지에서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.</p> <p>제615조(등기기간의 기산점) 제614조제2항·제3항 및 제614조의2의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등기기간은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.</p>